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저작권자 등 출판관계자 의견 수용 ... 7가지 표준 제시

출판물 저작자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주관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전문영 변호사(공동연구원)의 사회로 김기태 세명대 교수(책임연구원)가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남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자문위원, 박광기 교보문고 차장, 박몽구 한국작가회의 문인복지위원장,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리팀장,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총장, 정구성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법무팀장, 홍영태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이 지정토론에 참가했다. 김기태 교수는 "그동안 저작권자의 의견은 배제된 채 출판사 위주로 계약서가 작성돼 왔던 것이 관행"이라며 "출판사와 저작권자를 비롯해 유통사, 도서관 등 출판계의 의사가 합치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출판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름빵 작가 불공정 계약 논란에 표준계약서 제정

이번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은 지난해 하반기 논란이 됐던 그림책 '구름빵' 작가인 백하나 씨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계기가 됐다. 2004년 단행본으로 나온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은 지금까지 4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게다가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4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하나 작가는 인세로 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야 했지만 1850만원만 받는데 그쳤다. 2차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소설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무명 작가였음에도 인세와 영화 및 관련 상품 로열티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출판분야 유형별 표준계약서 제정

이번에 만들어진 출판분야에서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는 7가지로 ▲출판사 발행인이 저자,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일반 종이책 계약서인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물 발행인이 종이책 출판을 제외한 전자책 계약서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계약하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기존 매절 계약의 폐해를 일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이용권 확보를 위해 출판사 발행인 또는 저작물 발행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계약하는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콘텐츠 제공자와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계약하는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서(B2B)' ▲전자책 제작사 유통사와 도서관 등이 B2B 방식으로 계약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계약서(B2B)'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해외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등이다.

한편, 문화부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이 완료되면 표준계약서와 함께 출판업계 및 도서관계 종사자들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돕기 위한 용어 및 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